

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7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7848호, 2006.1.11. 공포, 2006.7.12. 시행)됨에 따라 이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정함. (안 제2조)
- 나.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정함. (안 제3조)
- 다.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정함. (안 제4조)
- 라. 물납된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정함. (안 제5조)
- 마.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하여 정함.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별첨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2007.3.23.~ 4.13.(21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
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「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」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(법 제13조에 따른 물납을 포함한다)
2. 법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및 과태료
3.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귀속분의 부과·징수 위임에 따른 위임수수료
4. 국가의 출연금·보조금 또는 융자금
5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6.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
2.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
3.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정비·개량
4. 법 제17조 및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
5. 기반시설부담금과 이에 따른 가산금 및 과태료에 대한 국가귀속분의 납입
6. 물납된 토지의 가액 중 국가귀속분의 납입
7.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·징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비용
8. 물납된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
9.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

제5조(물납된 토지의 처분 등) ①법 제13조제2항 및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물납된 토지는 평창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토지의 가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부터 전출하여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.

②물납된 토지의 활용 또는 처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등)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징수관·경리관 : 부군수
2. 채권관리관 : 부군수
3. 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 : 주무담당과장
4. 수입금출납원·지출원 : 주무담당

제7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「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 (전출금지)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. 다만, 「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물납토지가액에 대하여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계법령 발췌

※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
제4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,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(생략)

제13조(납부) ①(생략)

②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(이하 "물납"이라 한다)를 인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·절차 그 밖에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②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17조(부담금의 환급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.

②~③(생략)

제26조(과태료) ①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③~⑤ (생략)

※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물납)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해당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(이하 "물납"이라 한다)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액,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, 물납신청 당시 물납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⑤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을 받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(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)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.

⑥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으로 분배하는 기준, 양 특별회계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

제15조(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)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.

1.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납부의무자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

3.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

③~④(생략)